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 설치〉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671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 설치(안 별표 2)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정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9. 3.

다. 회 부 일 : 2025. 9.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6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 설치(안 별표 2)

현행	개정안
○ 별표 2 <신설>	- 별표 2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

현행법 제5조¹⁾에 따라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박정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명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
재 원	◦ 정부의 출연금 ◦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과징금의 직전 회계연도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구상권 행사에 따른 변제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용 도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관 리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이라 함)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²⁾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피해보상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³⁾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있어 이 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징금은 일반회계로 귀속됨에 따라 피해는 국민이 입고, 과징금은 정부가 가져가는 구조적 비대칭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과징금을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구제 등을 위한 용도로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제

3)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함.

4)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2.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5. 제26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7. 제28조의8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8. 제28조의9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기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징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⁵⁾의 보호 및 지원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보주체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과징금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하였을 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어려워 보이고, 일반회계로 개인정보 침해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구제 및 분쟁조정 등을 위한 사업을 既 추진 중⁶⁾에 있으며, 개인정보유출의 피해를 정부가 직접 구제할 경우, 가해 기업의 책임 회피 및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과다한 기금설치 방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14조⁷⁾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

5)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6) 개인정보 침해방지, 실태 점검 및 신고센터 운영 등: (’25년) 75억원

7)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

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개정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및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동 기금의 재원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과징금의 직전 회계연도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여,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재원-용도 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최근 3년간 과징금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연도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과징금은 부과·징수 규모를

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높은 변동성을 고려하였을 때 안정적인 기금 재원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세입예산 및 징수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C/A)	수납률(C/B)	미수납액
2024년	388	538	298	76.7	55.3	241
2023년	22	1,226	1,209	5,487.3	98.7	16
2022년	16	1,026	15	96.7	1.5	1,011

자료: 기획재정부

다음으로 ‘신축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피해자가 소송 중 발생하는 비용이나 최종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적 비용 등에 대한 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금을 기금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⁸⁾하고 있음. 또한,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⁹⁾하고 있음.

또한, 「민법」에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¹⁰⁾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특별하게 과징금 등을 통해 마련된 기금을 통해 지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삭제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9)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10)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u><신 설></u>	별표 2 <u>72. 「개인정보 보호법」</u>

문의처
02)6788-5152